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10.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10. 13

다. 상 정 일 자 : 2003. 10. 10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부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새무과장 허 길 중

나. 제안사유

- 국민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이자율 인하 등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규정의 일부 비비점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읍 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의 본청 이관으로 공유재산 관리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 삭제(안 제3조)
- 공공시설 위탁관리에 따른 범명지정(안 제5조 제2항)
-“영 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로 지정
-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행정재산의 규정 준용 삭제
(안 제11조 4항)
-2001. 3. 30 조례 개정시 제1항에 보존재산이 추가되어 내용이 중복됨.
- “사용·수익 허가 조건”을 “사용·수익 허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제9호 신설(안 제14조)
-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조정(안 제22조제1,2, 3항)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 납부시 매각 대금 잔액에 “연 5퍼센

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동조 2, 3항의 이자율을 잔액에 “연8퍼센트”를 “연 6퍼센트”로 조정

-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을 후단에 신설 반영 (안 제23조의2 제1항 후단)
- 토석 채취 등의 인용 법령 변경(안 제24조 제1항)
-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를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로 제3호 삭제
-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74조 규정상 용어로 통일(안 제25조의2, 제4항)
- “세입세출 예산 외 현금”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용어 변경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이자율 자동 인하 및 과태료 부과 기간 상한 설정(안 제28조제1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탁의 종류 관련 조문번호변경 (안 제31조의2)
- “영 제102조의 4”를 “영 제 102조의 5”로 개정
-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상 내용과 통일시키며, 대상지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동으로 명확히 함 (안 제39조의2, 제2항 제1호)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3조가 삭제됨에 따라 매각대금 감면 규정의 인용법령 변경(안 제39조의 4)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3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변경 개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헌범)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서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평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영 제84조의2의"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공무원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제목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허가조건

제22조제1항중 "잔액에 연 5퍼센트"를 "잔액에 연 4퍼센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잔액에 연 8퍼센트"를 "잔액에 연 6퍼센트"로 한다.

제23조의2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1항중 "제23조제3항제3호"를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2 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를 "교환차액을"로,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로,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100조 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1조의2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제39조의2 제5항제1호중 "광역시 지역에서는"을 "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으로, "시지역에서는"을 "시의 동지역에서는"으로, "기타지역에서는"을 "기타 이외의 지역에서는"으로 한다.

제39조의4제4항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3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②(배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④(연체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료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u>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u></p> <p>제5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생략)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p> <p>제11조(관리 및 처분) ①관리책임공무원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4조(사용·수익허가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p>	<p><삭제></p> <p>제5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 (현행과같음) ② - - - - - - - - - - - -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공무원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4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1.~8. (생략) <신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 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 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1.~6.(생략) ②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 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 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5. (생략) 제23조의2(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허가하 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 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p>	<p>1.~8. (현행과 같음) 9. 허가조건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 ----- 잔액에 4퍼센트의----- ----- 1.~6. (현행과 같음) ② ----- ----- 잔 액에 연 6퍼센트의 ----- ----- 1.~3. (현행과 같음) ③ ----- ----- 잔액에 연6퍼센트----- ----- 1.~5.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① ----- ----- ----- ----- -----</p>

현	행	개	정	안
보나				

현	행	개	정	안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②·③(생략)		제24조(토석채취료등) ①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영리복색(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③(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u>세입세출예산의 현금</u> 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전세금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③(현행과 같음) ④ - - - - - <u>세입세출의 현금</u> - - - - -	
⑤(생략)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료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u>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은 연 15퍼센트</u> 로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	⑤(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료율) ① - <u>교환차액을</u> - - - - -	

현행	개정안
<p>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②·③(생략)</p> <p>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한다</p> <p>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①~④(생략)</p> <p>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p>	<p>---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p> <p>---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수 없다.---</p> <p>---</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5---</p> <p>---</p> <p>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①~④(현행과 같음)</p> <p>⑤---</p> <p>---</p> <p>1. ---</p> <p>---</p> <p>(--- 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 시의 동 지역에서는 --- 기타 이외의 지역에 ---</p>

현행	개정안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 -----
2.~3(생략)	2.~3.(현행과 같음)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①~③(략)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①~③(행과 같음)
④영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각 호에 의한다.	④ ----- ----- -----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비화 500백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1.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 ----- ----- ----- -----
2.~5.(생략)	2.~5.(현행과 같음)
⑤·⑥(생략)	⑤·⑥(현행과 같음)